

수소 밸류체인별 규제지도 현황(부생수소 정제 및 제조)

사업절차		부생수소 정제 및 제조				
		① 구축계획	② 설계 및 기술검토	③ 인·허가	④ 시공	⑤ 운영
검토사항		- 부지확보 - 사업부지 적정성 확인(토지이용)	- 지질조사 - 설계도면 - 기술검토 - 안전성평가	- 기술검토(完) - 고압가스제조허가(完) - 충전허가(完) - 건축허가(完)	- 착공신고 - 중간/완성검사 - 안전관리규정 제출	- 고압가스 충전사업 사업개시신고 - 건축물사용승인
관 련 법 및 규 정	국토계획법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 가스분야 업무절차 (→ : 시공前) ① 사업계획서 및 기술검토서 작성 → ② 기술검토신청서 접수 → ③ 기술검토서 승인 → ④ 기술검토必 → ⑤ 고압가스제조허가 신청 → ⑥ 고압가스제조허가증 발급 → ⑦ 중간검사신청·실시 → ⑧ 완성검사신청·실시 → ⑨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및 규정심사신청 접수 → ⑩ 완성검사 필증 발급 및 안전관리 규정안 교부 → ⑪ 고압가스제조 신고서 및 추가서류 제출 → ⑫ 가스공급개시 ▶ 건축분야 업무절차 (→ : 시공前) ① 경계측량 신청서 접수 → ②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접수 → ③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접수 → ④ 건축허가 신청서 접수 → ⑤ 착공신고서 접수 → ⑥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 접수 ▶ 전기분야 업무절차 ① 전기감리선정 및 전기사용신청서 접수 → ② 사용전 검사 신청서 접수 → ③ 사용전검사 및 실시확인서 발급 → ④ 계량기설치 및 통전 → 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접수 → ⑥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필증 교부			
	교육환경법	제8, 9조(설치불가지역)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2, 13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2(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시행령 제46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절차)				
	지자체 조례	지자체별로 관련 조례 확인필요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산업집적법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제13조의2(인가·허가 등의 의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시행령 별표1(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 제11조(건축허가) - 제20조(가설건축물) - 시행령 제9조(건축허가신청) -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 시행규칙 제13조(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제21조(착공신고 등) -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산업안전보건법	-	-	-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고압가스법	-	- 시행령 제3조(설치계획에 대한 기술검토) - 시행규칙 제7조(기술검토 등의 신청)	- 시행령 제3조(허가대상) -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 제16조(검사 등) 중간/완성검사 - 제11조(안전관리규정) 안전관리규정제출 - 제20조(사용신고 등)	- 제7조(사업개시등의 신고) - 제15조(안전관리자 선임) - 제25조(보험가입) - 제18조의3(품질검사) - 제16조의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전기안전관리법	-	제67조(기술기준)	제8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제63조(사용전검사)	-
	폐기물관리법	-	-	-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	-
	대기환경보전법	-	-	-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
	소음진동관리법	-	-	제7조(공장 소음 진동배출허용기준)	-	-
	KGS코드	-	- FP112(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 기준) - FU211(고압가스 사용시설 기술기준) - GC101, GC102(전기방폭 기준) - GC103, GC104(방폭전기기기 점검)	-	- FP112(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 기준) - FU211(고압가스 사용시설 기술기준) - GC101, GC102(전기방폭 기준) - GC103, GC104(방폭전기기기 점검)	-